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79251(본소), 2023나122(반소) 판결 [각서금 청구의  
소 · 보증채무금(대여금)반환]

---

##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승 담당변호사 문상석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4.

판 결 선 고 2023. 6. 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87241 판결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C(개명 전 D, 이하 'C'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2017. 12. 6.부터 2017. 12.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 13.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7. 12. 20. 원고로부터 대여받고, 위 금원을 2021. 12. 30.까지 변제하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 E과 공동으로 주택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C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건축주가 공사대금 156,6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C, E은 각 52,230,000원(= 156,690,000원 ÷ 3)의 손실을 분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C가 투자한 4,0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의해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무관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원범, 판사 김지연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심리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무관한 것으로 이 법원에서 이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 원고(반소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있고, 원고(반소피고)가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2023. 5. 9.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제219조에 따라 반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